

職務發明補償制度 통한

技術確立만이 成長約束

代自動車株式會社 篇

職務發明補償施行規則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社規中 提案規定 第6條(發明에 對한 措置)를 施行함에 있어서 會社 從業員의 職務에 關係되는 發明考案을 하여 取得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以下 特許權이라 한다)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이를 保護, 勸獎하여 從業員의 研究開發意慾을 向上시키고 工業所有權을 合理的으로 管理, 運營하여 會社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職務發明이라 함은 從業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그 發明行爲가 從業員의 現在 또는 過去의 任務에 屬하는 것을 말한다.

②自由發明이라 함은 前號의 規定에 依한 發明以外에 會社 從業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③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 從業員을 말한다.

④從業員이라 함은 會社에서 發給한 任職員을 말한다.

⑤會社의 業務範圍과 함은 會社 登記簿上의 事業目的範圍에 屬하거나 別途로 賦與받은 課題을

말한다.

第3條(權利의 承繼) ①職務發明은 會社가 그 權利를 承繼한다.
②從業員이 한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은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의 持分단을 承繼한다. 단, 會社가 그 權利를 承繼할 必要性 또는 價值가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承繼하지 아니한다.

第4條(發明者에 對한 补償) 會社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이 規定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补償金을 支給한다.

第5條(主管部署) 職務發明의 主管部署는 本社 特許情報室로 한다.

第2章 届出 및 出願

第6條(届出) 發明을 한 從業員은 그 發明의 内容을 所屬部署長을 經由 또는 直接 別紙 1號書式에 依하여 主管部署에 提出한다.

第7條(出願) ①主管部署는 前條에 依하여 届出된 發明이 職務發明임이 確實하고 會社가 承繼함이妥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代表理事의 承認을 받아 會社名義로 出願하여야 한다.

②主管部署는 前條의 發明이 職務發明의 與否와 會社가 承繼할 것인지의 與否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委員會의 召集을 要

求하고 그 決定에 따른다.

第8條(發明의 通知) ①主管部署는 前條에 依한 結果를 別紙 2號書式에 依하여 所屬部署長을 經由 또는 直接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特許出願이 公告, 登錄 补償決定이 되었을 때에도 前項과 같이 하여야 한다.

第9條(異議申請) ①發明者는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委員會의 審查結果를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에 文書로써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申請은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管部署長에게 提出한다.

③主管部署長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委員長에게 該當發明 再審查를 為한 委員會의 召集 要請等 必要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10條(特許를 받을 權利의 讓渡義務) ①發明者는 會社가 第7條의 規定에 따라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할 것을 決定한 때에는 그 權利를 會社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1條(出願 및 讓渡 制限) 職務發明인 境遇 그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會社가 承繼與否를 決定한 後가 아니면 特許出願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3) 企業發展戰略, 그捷徑

第12條(秘密保持) ①會社員은 職務發明에 該當하는 모든 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出願하거나 會社가 權利를 承繼하지 않기로 決定한 後가 아니면 그 内容을 會社의 同意없이 第3者에게 漏泄할 수 없다.

②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職務發明에 關한 權利를 會社가 承繼하되 特許出願을 하지 아니하고 會社가 技術秘訣(KNOW-HOW)等으로 保有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發明者は 委員會가 定하는 一定期間동안 그 内容을 漏泄하여 서는 않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을 하지 않기로 한 發明에 關하여相當한 補償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고 이에 同意한 發明者が 委員會의 決定을 無視하고 秘密을 漏泄하는 境遇에 發明者は 該當發明에 關하여 受領한 補償金을返還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會社가 입은 損害를賠償하여야 한다.

第3章 補 償

第13條(出願 및 出願告公補償) ① 發明者が 會社名義로 發明特許를 特許廳에 出願하였을 때에는 別途로 定한 補償金支給表別表第1號에 依하여 出願補償金을 支給한다.

②會社名義로 出願한 内容이 公告되었을 때는 別途로 定한 補償金支給表에 依하여 出願告公補償金을 支給한다.

第14條(登録補償) ①會社名義로 出願한 發明이 特許를 後 委員會의 審查를 거쳐 別途로 定한 補償金支給表에 依하여 登錄補償金을 支給한다.

第15條(實施 및 實績補償) ①會社가 特許權을 實施할 때 委員會의

審查를 거쳐 別途로 定한 補償金支給表에 따라 實施補償金을 支給한다.

②會社는 前項의 實施 活用狀況을 年一 또는 二回 調査分析한 후 그 發明의 實施效果가 會社經營實績에 顯著한 功獻을 하였다고 認定되는 境遇 委員會의 審查를 거쳐 年間 純利益金의 1% 以內의 實績補償金을 支給한다.

第16條(處分補償) ①第7條의 規定에 따라 出願하여 會社所有로 登錄된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 또는 實施許與할 때에는 그 等級에 따라 代金의 2%~5%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②職務發明에 依한 特許權을 第3者에게 無償으로 實施를 許與할 때에는 第19條 規定의 基準에 따른 金額을 支給한다.

第17條(防禦補償) 會社가 關聯하는 特許權이 出願公告等이 되었을 때 异議申請(審判)에 參與하여 事件을 無効 또는 會社가 有益한 結果(共有 또는 實施權獲得等)을 가져온 境遇에는 別途로 定한 補償金支給表에 依하여 防禦補償金을 支給한다.

第18條(補償決定) ①補償等級의 決定과 補償金額限度 및 支給方法에 關한 決定은 評價基準表(別表第2號)에 依하여 委員會에서 審查하여 代表理事의 決裁를 얻어 支給한다.

②傍系會社나 外部人士가 會社名義로 出願을 하였을 때에는 委員會의 決定으로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한다.

③發明이 基準補償 最高額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委員會에서 審查後 調定하여 代表理事의 決裁를 얻어 支給한다.

第19條(補償金의 持分支給) ①이

規定에 依하여 補償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二人以上일 경우는 그 차분에 따라 支給한다.

②發明者が 退職한 境遇에는 委員會의 決定으로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한다.

③發明者が 死亡하였을 境遇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補償金額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0條(補償金의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補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境遇에도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無効가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章 職務發明審查委員會

第21條(職務發明審查委員會) ①職務發明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查하기 为하여 職務發明審查委員會를 둔다.

②職務發明審查委員會에서 審查된 事項은 代表理事의 承認을 받아 執行한다.

第22條(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과 5人~9人の 委員 및 幹事로 構成한다.

②委員長과 副委員長은 理事 以上에서 委員은 主務部署, 企劃 및 技術係部署의 社員中에서 代表理事가 任命한 者로 한다.

③諸問에 應하기 为하여 委員長은 專門家를 諸問委員으로 할 수 있다.

④諸問委員의 委嘱은 委員長이 提請하여 代表理事가 한다.

⑤幹事는 特許課長으로 한다.

第23條(委員長)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總括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이 有故時에는 副委員長이 職務를 代行한다.

第24條(審查事項) 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審查한다.

- ① 第7條第2項에 關聯된 事項
- ② 特許權에 關한 評價 및 補償金支給에 關한 事項
- ③ 特許權讓渡, 實施許與 및 其他處分에 關한 事項
- ④ 職務發明補償制度의 改定 및 運營에 關한 事項
- ⑤ 其他 必要事項

第25條(委員會의 議事)

- ① 委員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幹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②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 ③ 表決結果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26條(意見聽取) 職務發明을 審查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本人 또는 關係者를 會議에 出席시켜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第5章 雜則

第27條(自由發明의 承繼)

- ① 會社는 自由發明에 對하여 發明者로부터 別紙書式 3號의 自由發明讓渡申請書에 依하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을 때에 이規定에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 ② 前項의規定에 依하여 會社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및 特許權을 承繼할 境遇 第3章의 補償規定에 準用한다.

第28條(發明者의 協力義務)

- ① 發明者는 그가 한 發明에 對하여 異議 또는 審判이 起起될 때 審理終決時까지 書類作成에 協力할義務가 있다.

② 發明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이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會社 또는 實施許與를 받은자가 必要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 協力할義務가 있다.

準用하여 그 補償金은 2倍로 한다.

附 則

① 이 規定은 19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規定 施行前에 發生한 事項으로 現在 繫留中인 事項도 이 規定을 準用한다.

別表第1號

補償金支給表

1. 出願補償 및 出願公告補償

區 分	出願補償額	出願公告補償額	備 考
發 明	50,000	100,000	單位: 원
實 用 新 案		30,000	
意 匠		20,000	
商 標		10,000	

2. 登錄補償

區 分	等級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備 考
發 明	800,000	6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單位: 원
實 用 新 案	400,000	300,000	150,000	100,000	200,000		
意 匠	100,000	70,000	50,000	30,000	50,000		
商 標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3. 實施補償

區 分	等級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備 考
發 明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單位
實 用 新 案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원
意 匠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商 標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4. 防禦補償

	異議申請	審 判	備 考
發 明	100,000	300,000	單位: 원
實 用 新 案	50,000	150,000	
意 匠	20,000	50,000	
商 標	10,000	20,000	